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도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40

발의년월일 : 2019년 9월 27일

발 의 자 : 송도호 의원 (1명)

찬 성 자 : 김상훈, 고병국, 양민규,

이태성, 이준형, 송재혁,

권수정, 임종국, 문장길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수 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중 안내 방송시설만 반영되어 있고 전자문자안내판은 빠져있으므로 이를 명문 화하여 교통정보 식별편의 향상 및 시인성 확보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 용편의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이용시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임.
- 또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법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여 개정된 법규정에 따르도록 함. (안 제15조제1항제1호)
- 나.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내외부에 도착정류장의 이름·목 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 판을 설치하는 조항 신설 (안 제18조제4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18조의 제목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을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 도록 교통수단 내외부에 도착정류장의 이름·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게4.5구 /토버크투스다 시유미사기)	게4F코/투버코투스다. Al Q 레샤기)
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생 략)	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u>제2</u> <u>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u> <u>애인</u>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u>제2</u> <u>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u> <u>장애인</u>
2.~ 4. (생 략)	2.~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교통약자를 위한 <u>안내방송</u>)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8조(교통약자를 위한 <u>안내방송 등</u>)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 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내외부에 도 착정류장의 이름·목적지 및 문의 개 페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
	<u>도록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u> <u>야 한다.</u>